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2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258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197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김미숙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별님

변론 종결2020. 6. 25.

판결 선고2020. 7. 23.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197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D, E, F은 원주시 원성군 G 전 2188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1973. 11. 7. 접수 제13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3분의 1 지분의, 피고 C은 원주시 원성군 G 전 2188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1994. 3. 16. 접수 제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중선

판사김현정

판사신희호